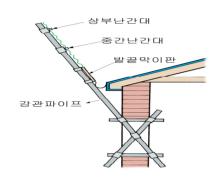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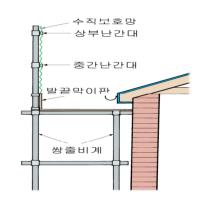
(2) 일반적으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방법은 <그림 5>와 같으며 그림의 (가)와 같이 열린 창문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큰 하중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.0 KN(408 kg) 이상의 하중이 걸릴 경우는 그림의 (나)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<가> 열린 창문을 이용하는 방법

<나> 처마 바로 아래 작업발판 설치방법

<그림 5>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방법

- (3)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- (가) 지붕단부 및 개구부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되 작업자의 추락거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작업위치와 가까운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나)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럭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4) 트롤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(가) 트롤리 설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지붕에서는 설치 및 조립에 대한 제품 사양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